



[2019. 5. 14.] [29756 , 2019. 5. 14.,]

() 02 - 3150 - 2756

1 () 「 」 .

2 () 「 」 (" ") 4 1
 " ") (" ")
 가 (, ,) . < 2014. 3. 18.>

1. 1

2. 1

3 () 5 3 . < 2013. 3. 23.,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1. 18 가 .

2.

4 () 4 2 (" ") 5
 1 30
 가 5 1 10

5 ()
 1 () 3
 1 . < 2015. 11. 20.>
 1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6 () ()
 1 가

7 () 5 4

8 () 5 2 1
 5 2 2 (停職) 1 3 ,
 , 3 2 .

5 2 2 1 3 , 3 1 .
5 2 2 (譴責) (前過) .
15

5

9 (가) 6 2 가

6 2 가 1 . 가
가 , ,
6 2 .

10 (가) 가

6 3

11 ()

(算入) . < 2015. 11.

20.>

- 1.
- 2.
3. . .

4. 가 가 (常勤)

가

가

12 () 6 1 1 3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6 3

12 . , 가

13 () 7 「 」

가 , 「 」 (財源)

14 () (服制) . (裝具)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가

15 () 「 . . 」 가
 . < 2016. 1. 6.>

16 () 가 8 2

1 가

1 .
 .<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7 () 1

- 1.
- 2.

18 () 「 」

19 () 「 」 (" ")가

1

20 () 10 3

1. 4 2 3
2. 5 1
3. 9 3 2
4. 12

20 2()

가 「 」 23 18 2 가
, 19 1 4

- 1.
2. 8
3. 9 3
4. 1 3

[2012. 1. 6.]

20 3() 8 2014 1 1 3
 (3 1 1)
 [2013. 12. 30.]
 21 () 12 1 2
 50 , 2 100
 12 1

< 22217 ,2010. 6. 28.>

2010 7 1

< 22269 ,2010. 7. 12.> ()

1 () . < >

2 () <120>

<121>

9 " " " "

<122> <136>

< 22908 ,2011. 4. 28.>

, 2011 1 1

< 23488 ,2012. 1. 6.> ()

1 () . < >

2

< 23738 ,2012. 4. 18.>

, 2012 1 1

< 24403 ,2013. 3. 18.>

1 () .

2 () 2013 1 1 .

< 24419 ,2013. 3. 23.> ()

1 () .

2

3 ()

3 2 , 5 3 , 12 1 , 14 2 16 4 " " "

< 25050 ,2013. 12. 30.> ()

2014 1 1 . < >

< 25258 ,2014. 3. 18.>

1 () .

2 () 1 2014 1 1 .

< 25751 ,2014. 11. 19.> ()

1 () . , 5

2 4

5 () <263>

<264>

3 2 , 5 3 , 12 1 , 14 2 16 4 " " "

<265> <418>

< 26352 ,2015. 6. 30.>

1 () . , 1 2015 7 1 .

2 () 2015 1 1 2015 6 30
1 1 2 .

< 26659 ,2015. 11. 20.> ()

1 () 2016 1 25 . < >

2

3 () ㉕

㉖

5 2 " " " " .
11 1 2 " " " " .

㉗ ㉘

4

< 26858 ,2016. 1. 6.>(. .)

1 () 2016 1 7 .

2 ()

15 " 「 . . 」 " " 「 . . 」 " .

3

< 27168 ,2016. 5. 17.>

1 () .

2 () 1 2016 1 1 .

< 28127 ,2017. 6. 20.>

1 () .

2 () 1 2017 1 1 .

< 28215 ,2017. 7. 26.>()

1 () .

2

3 () ㉙

㉚

3 2 , 5 3 , 12 1 , 14 2 16 4 " " "

㉛

< 28884 ,2018. 5. 15.>

1 ()

2 () 1 2018 1 1

< 29756 ,2019. 5. 14.>

1 ()

2 () 1 2019 1 1

■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5. 1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592,400	-	-	-
2	1,636,200	-	-	-
3	1,714,700	-	-	-
4	1,797,900	-	-	-
5	1,881,900	-	-	-
6	1,967,700	-	-	-
7	2,049,900	-	-	-
8	2,129,100	-	-	-
9	2,205,000	-	-	-
10	2,277,900	-	-	-
11	2,347,600	-	-	-
12	2,416,600	-	-	-
13	2,483,000	2,619,800	-	-
14	2,547,300	2,686,800	-	-
15	2,608,900	2,751,200	-	-
16	2,668,400	2,813,300	-	-
17	2,726,700	2,871,300	-	-
18	2,780,900	2,927,700	-	-
19	2,834,200	2,981,700	3,282,300	-
20	2,885,000	3,033,200	3,337,700	-
21	2,932,800	3,082,400	3,390,500	-
22	2,979,000	3,129,600	3,440,400	-
23	3,022,800	3,174,500	3,488,500	-
24	3,064,900	3,217,900	3,534,400	3,784,400
25	3,105,000	3,259,100	3,577,700	3,829,500
26	3,141,300	3,299,100	3,619,200	3,870,900
27	3,172,500	3,332,300	3,654,400	3,906,300
28	3,202,600	3,364,300	3,687,100	3,940,500
29	3,231,700	3,394,600	3,718,800	3,972,500
30	3,260,000	3,424,000	3,749,000	4,003,000
31	3,287,600	3,452,500	3,777,400	4,031,900

■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16. 5. 17.>

■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가. 국가 중요 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인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500만원 400만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원경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500만원 3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500만원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법 제12조 제1항제3호	500만원 300만원